

『구미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각종 전자문서, 민원서류 발급 등에 사용되는 공인의 글씨체를 알아보기 쉽고 간명한 글씨체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려웠던 불편함을 개선하고 시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
 - [현행] 구미시공인조례 → [개정] 구미시 공인 조례
- 공인의 글씨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- [현행] 한글 전서체 → [개정]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
- 공인의 비치, 사용 대상자 범위 명확화(안 제2조제1항, 제6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알아보기 쉬운 한글체로 공인 글씨체를 변경하고 공인의 비치, 사용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며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제명을 「구미시 공인 조례」로 변경하고 각종 서류 발급 등에 사용되는 공인의 글씨체를 알아보기 쉽도록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